「전기제품 안전관리」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 제도」도입 추진

프린터 · 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 제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현재, 주요 전기제품(247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 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

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 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 ※ 입법예고기간 '07.2.28 ~ 3.19(20일간)
- 앞으로 전기제품에 대한「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제품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신제품의 시장진입이쉬워지고 신제품 설계단계에서 부터 기업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밖에도, 불법ㆍ불량 전기제품 유통정보를 언론ㆍ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 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해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ㆍ판매중 지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율안전확인제도」도입을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Ⅰ.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기술발전 · 수요변화로 기존 인증제도에 의한 안전관리 한계

- 다양하고 까다로운 신개발제품 보급이 증가하고 소 비자안전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 조 성필요
- 기업은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 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자율안전확인제 도 도입

- ※ 현재, 247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
- 신제품 시장진입 애로해소와 인증비용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 인증시장개방·인증마크상호인정에 대비한 제도개선 필요
-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제도 채택이 국제적인 추세로 세계각국의 인증제도가 자율안전확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자율안전확인 기반의 외국인증마크 : EU CE, 미국 UL, 일본 PSE 등
- FTA/MRA·DDA협상시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요구 증가

기타 법령운영상 미비점 개선필요

- 불법전기용품 대여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정보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등

Ⅱ. 주요 개정내용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 관리방법을 차별화

- (1)「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낮은 품 목은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도록 함
-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 발제품 등을「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
- 전선·퓨즈·전열기구 등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 자율안전확인을 위해 정부가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제품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 ※ 신고시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 부(유효기간: 3년)
- 향후, 시험기관지정과 신고의무에 대한 자율화 검토
- (2) 기업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자율성은 보장하되, 법위 반에 대한 범칙은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

- (1) 불법전기용품을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불법전기용품 대여」는「불법전기용품 제조·판매」와 는 성격이 달라 처벌이 곤란한 실정임
-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처벌기준 을 적용
- ※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안전성조사」실시근거 마련
-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해확산 방지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3) 유통중인 전기용품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유 통되는 불법·불량 전기용품 증가가 예상됨
- 백화점·대형유통업체·언론 등에 불법·불량 전기 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하여 시장사후관리 기능강화

기표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제품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불법제품 감시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 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사이버쇼핑몰 시장규모: 지난해 13조 4천억원 규모로 전 년대비 26% 증가
 - ('04)7조7천억원 → ('05)10조6천억원 → (' 06)13조 4 천억원(통계청)
- ※ 사이버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 ('04)17,673건 → ('05)25,141건 → ('06)24,023건(한 국소비자보호원)

불법제품이란, 의무사항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제품을 지칭한다. 참고로 가전제품, 전열기등 전기용품(247개 품목), 공산품(65개) 등은 의무적으로 '안 전인증'등을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2. 23(금)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임영학 CJ홈쇼핑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자 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각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사업자단체가 통신판매업자 의 불법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자는 '제품안전자율이행(VAS: Voluntary Arrangement on Safety)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율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준수 선언'은 통신판매업자가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 을 것을 선언하고 제품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정기적으로 VAS 마크 사용 판매업자들을 평가,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소비자와 사업자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이버몰 안전관리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 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제품 안전 인증 'S마크' 큰 인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 · 기구와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 안전인증'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국내기업 의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9일 'S마크 안전인증' 신청 현황에 대해 "인증도입 초기인 1997년에는 44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334건, 2004년 1040건에 이어 금년 8월 현재 11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은 국내·외 노동환경에서 안전 요구수 준이 높아졌으며 반도체, LCD제조업 등에서 사용되는 첨단장비의 경우 안전성이 설비의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등 제품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특히, 최근 선진 각국이 안전·환경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인증제도가 국제교역과정에서 무역장벽이되고 있어 기계·설비 및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향상시

킬 수 있는 'S마크 안전인증'은 그 효용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국제표준(ISO, IEC)과 유럽연합규격(EN) 등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안전성 심사를 함으로써 유럽 CE마크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PL) 제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공단은 "지금까지 국내 토종 인증인 'S마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193개 기업이 신청해 이중 73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43개사에 대해 인증심사가 진행되는 등 'S마크 안전인증'이 국내 안전기술의 수준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마크 제도는 지난 1996년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1997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